



관세국경을 지켜온 50년
국민안전을 위한 100년



보도자료

OPEN www.customs.go.kr
대변인실 042-481-7616~7

보도일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<i>힘내라 대한민국</i>
배포일자	2020. 8. 13. (목)	담당부서	특송통관3과
담당과장	강봉철 (032-722-4880)	담당자	박명순 계장 (032-722-4595)

**“인천세관 특송통관국, ‘금(gold) 제품’ 통관관리강화 방침”
-실제 금제품을 악세사리 등으로 신고한 불법사례 적발도 늘어나-**

□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일반 주얼리 및 악세사리류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하였다.

□ 그 결과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(시가 7천만원 상당)을 적발하였다. 이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(72점, 4천2백만원 상당)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* 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하였다.

***통고처분 : 관세법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,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,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**

□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되었던 금제품이 코로나-19로 국제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이라 판단된다.

□ 적발된 금제품류 불법수입 주요유형은

- ① 최근에 유행하는 일반 주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
- ②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.

□ 실제적발사례

- ① A씨는 순도 97%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 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만원을 탈루하려다 적발되어 벌금 4,541,040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.
- ② B씨는 순도 94%이상의 고가금제품류를 저가금제품류로 품명을 기재하고 실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세 총 120여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.

□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세관은 집중단속기간(2020.7.20.~9.30)에 전 직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각과별, 수입단계별로 정확한 역할분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.

- 주요내용은 정보분석 및 X-RAY 전수검사를 통하여 선별된 금제품류 및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건은 전문공인감정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감정을 실시하고
- 고액이거나 상습적인 불법수입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혐의로 범칙조사 및 통고처분하고 우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□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“앞으로도 금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밀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우회 밀반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특송국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“이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 “밀수입된 금제품류를 알면서도 구매하면 밀수품 취득죄**로 처벌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“라고 당부했다.

****밀수품취득죄 : 취득물품 몰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**